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자력안전정보에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정보 포함〉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992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원자력안전정보에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정보 포함(안 제2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31.

다. 회 부 일 : 2026. 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에 대하여 운영 종료 이후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승인을 시작으로 해체절차가 진행 중임.

현행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법」과 별도로 규율하기 위하여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수집·보유·관리 및 공개·제공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상황별 방사선 관리, 폐기물 관리, 작업자 안전관리 등 정보가 포함되는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개념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및 해체상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해체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한 공개를 촉진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Ⅲ. 검토의견

1. 원자력안전정보에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정보 포함(안 제2조)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2조제1항제1호 “원자력안전정보” 중 나목의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를 “건설·운영허가 및 해체승인·해체상황 등 해체”로 수정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1. “원자력안전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1.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원자력이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건설·운영 <u>허가</u> 에 관한 정보	나. ----- ----- ----- ----- ----- ----- <u>----허가 및 해체승인·해체상황 등 해체</u> -----
다.·라. (생략)	다.·라.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은 원자력안전정보의 하나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에 관한 정보’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¹⁾에 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음.
-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 과정은 방사성물질 관리, 방사선 피폭 관리, 폐기물 처리 등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단계에 해당함.
- 그러나 현행 규정은 해체 관련 정보의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정보공개의 범위와 수준에 관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원자력이용시설”이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2. 핵연료주기시설
3. 핵물질의 사용시설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시설·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보관시설·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5. 방사선발생장치 및 그 부대시설
6.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7.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8.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

- 이에 해체 관련 정보를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정보공개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상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에 관한 정보’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단계별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규정된 것으로, 후속 행정처분인 ‘해체 승인’ 역시 원전 전(全)주기 규제 체계상 동일한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원자력안전법」 체계상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운영에는 시설의 해체 등 관련 절차가 포함되어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 관련 정보가 이미 현행법상 ‘건설·운영허가에 관한 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행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원전에 관한 모든 사항과 함께 해체 관련 정보, 변경허가 등 세부적인 사항도 ‘원자력안전정보’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함.
- 종합적으로 동 개정안은 해체 관련 정보의 포함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

하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해체승인’의 개념에 법령상 해체 단계 전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체승인·해체상황 등 해체에 관한 정보’보다는 ‘해체승인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입법 표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227